탄 원 서

피고인	황원진	전 국가정보원 제2차장
사건	내란중요임무종사·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 2026고합575
수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8-2부 귀중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재판부 판사님들께.

1. 탄원의 취지와 확인된 절차 범위

2026년 8월 공개보도에 따르면 황원진 전 국가정보원 제2차장은 내란중요임무종사와 국가정보원법 위반 관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 2026년 10월 30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됐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9] 다만 이 문서는 10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해당 기일의 진행 결과나 최신 공소장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특정 주장이나 항변이 받아들여졌다고 전제하지 않습니다. 국가안보기관의 권한 남용은 엄중히 심리하되 황원진 개인의 발언·지시·실행을 다른 간부들의 행동과 분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 23시 30분 정무직 회의 발언

수사 관련 진술을 전한 보도에는 2024년 12월 3일 23시 30분경 회의에서 황원진이 계엄사 수사본부에 국정원이 협조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2] 이는 언론이 전한 진술의 내용이지 재판부의 확정 사실이 아닙니다. 그 발언이 추상적인 법률상 협조 가능성에 관한 의견인지, 특정인에 대한 위법 수사 또는 인력 투입을 실제 독려하는 지시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회의록·진술 원문과 발언 직후의 지시 및 실무 행동을 확인해 주십시오.

3. 합수본 파견 및 수사대상 선정 지시 의혹

특검의 설명에는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 인원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와, 대공수사권이 회복될 경우 수사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했다는 지시 혐의가 구분돼 있습니다. [1] 각각의 지시 수신자, 관련 문건의 작성과 전달, 실제 명단 존재 여부, 파견·조사의 실행 여부를 별도로 대조해야 합니다. 단순한 법령 검토만 있었는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조치의 준비까지 진행됐는지는 형사책임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실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준비행위의 중요성이 자동 소멸하는 것도 아닙니다.

4. 당시 국가정보원법과 직권남용 판단

2024년 12월 당시 시행된 국가정보원법의 직무·권한과 벌칙을 적용 법령의 정확한 연혁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0] 특히 직권을 남용했는지뿐 아니라 지시를 받은 사람이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했는지, 또는 권리행사가 방해됐는지에 관한 구체적 사실이 필요합니다. [3] [4] 대법원 2021년 3월 11일 선고 2020도12583 판결은 관련 법리를 검토할 기준 판결로 인용할 수 있지만, 피고인에게 자동으로 유리한 무죄 판례는 아닙니다. 그 판결의 해당 부분에는 파기환송 판단도 포함돼 있으므로 사실관계와 적용 법률의 차이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5]

5. 내란 협의와 개별 양형의 독립 판단

내란중요임무종사는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의 성립 여부와 별도로 형법 제87조·제91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6] [7]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실제 수행한 일의 중요성, 다른 지휘부와의 의사연락이 어떤 증거로 확인되는지 판단해 주십시오. 유죄로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지시의 명확성, 실행에 미친 영향, 중단 여부와 결과 등 입증된 사정을 형법 제51조에 따라 개별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8]

6. 결어

국가정보원의 권한은 국민의 자유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그 행사와 남용 여부는 엄격히 판단돼야 합니다. 같은 이유로 특정 개인의 유죄도 추측이 아닌 정확한 증거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황원진 전 차장의 고유한 지시와 인식, 실행 결과를 다른 피고인의 행위와 구분하여 심리해 주시기를 정중히 탄원드립니다.

탄원인: _____ (서명 또는 인)

주소: _____

연락처: _____ 생년월일: _____

황원진 | 참고자료 및 제출 전 확인

1. 실제 본문에 인용한 공개자료

[1] 연합뉴스 2026.8.19. 국정원 4명 기소 및 개인별 혐의

[2] 연합뉴스 2026.6.1. 국정원 정무직 회의 발언을 전한 수사 보도

[3] 국가정보원법 제13조: 직권남용 금지

[4] 국가정보원법 제22조: 벌칙

[5] 대법원 2021.3.11. 2020도12583 주요 판결

[6] 형법 제87조: 내란

[7] 형법 제91조: 국헌문란의 정의

[8]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9] 연합뉴스, 2026.10.25. 국정원 지휘부 10.30. 공판준비기일 예정

[10]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정보원법 2024.1.1 시행본 (사건 당시 역사 법령)

2. 사건기록과 직접 대조할 항목

- 23:30 정무직 회의록·진술조서
- 합동수사본부 파견 검토·대상 선정 지시 원문
- 2024년 국가정보원법 연혁본 및 실제 수행업무